

# Q & A

---

# 목 차

---

1. 사업 계획 및 사업비 교부
2. 사업비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3. 사업비 집행 및 관리
4. 연차평가, 컨설팅
5. 기타사항

## < 사업비 교부 시기 >

Q1

관련 질의 4건

- 2019년 3차 사업비(30%) 교부는 언제 되는지?
- 2020년 사업비 교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사업비 배정이 늦어지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3월(개강) 1차 사업비(약 30%) 조기교부 요청

A1

- 2019년 3차 사업비(30%) 교부는 11월 말 예정
  - (선행 절차) ① 부정비리점검(~9.30기준) 결과 심의 및 제재 통보 ② 제재 대학 이의제기 접수 ③ 이의제기 심의 및 후속조치 ④ 인센티브 배분(안) 심의 ⑤ 3차 사업비(30%) 및 인센티브 교부
- 2020년 사업비 교부 계획은 확정 전이나, 대학의 의견을 고려하여 내년 3월 1차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9년 기준) 1차(30%, 4.11.) - 2차(40%, 6.28.) - 3차(30%, 11월 중)
  - (사업 훈령 제33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 대학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연차평가 이전에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 계획(내용) 변경 >

Q2

관련 질의 5건

-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프로그램이 아닌 **신규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 학생들의 요구와 대학의 교육 방향에 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함
- 사업계획서 상의 **자율성과지표 세부항목의 산출기준 변경이 가능한지?**
-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한국연구재단 보고 기한 및 절차는?**

A2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6

- **가능.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 ·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후, 대학이 판단하기에 사업 계획(내용) 변경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변경 가능**
  - 다만, 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산출방식 등과 자율성과지표 달성에 수반되는 (세부)프로그램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역량강화형(2유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내용도 수정 불가
- **사업계획(내용)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 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시 당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 변경사유, 증빙(심의이력)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 연차평가 시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예정

### < 인건비 – 기타직 보수 비목 >

Q3

관련 질의 3건

-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발성·단기성·임시성을 띠는 TA, 보조인력에 대한 경비도 모두 인건비 비목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 프로그램 별로 배정되어 있는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직원 인건비를 프로그램 베이스가 아닌 별도의 인건비 비목으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A3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7

-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로 활용하는 보조인력(진행요원 등) 보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도 집행가능한 것으로 명시함
- 그러나 단기 인력이 아닌,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건비 비목으로 집행 필요

### < 인건비 – 내부교직원 수당 >

Q4

관련질의 10건

- 대학혁신지원사업 **신규 채용인력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 인건비 중 **기존 교원 및 직원의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 혁신지원사업과 직접 연계 운영되는 자체평가위원회, 집필위원회, 환류 모니터링단 등의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지침의 유연화를 요청

A4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7

- **가능.** 사업을 위한 신규 채용인력의 경우, **대학의 기존 보수규정 등에 따라 포함되어있는 성과급 등은 지급**이 가능
- **불가.**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는 **상위 규정인 국립대학 회계 지침에 지급 불가함에 따라 본 사업에서도 불가한 상황**
  -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예외를 요청하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 중

### < 프로그램 - 부가 업무수당 >

Q5

관련질의 10건

- 현재 내부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은 원고료와 비정규 특강에 대한 특강비에 한정되어있는데, 재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직원의 참여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심사료, 자문비** 등 부가수당 지급 가능 범위를 확대해주실 수 없는지?

A5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4

- 가능. 기존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서도 원고료와 특강비에 한정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종류를 좀 더 명시**해달라는 대학 요청에 의거, **가이드라인**에 일부 예시를 더 포함
  - 사업 목적에 부합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한 특강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원고료**, 프로그램 관련 학생 공모전 **심사비**, 현장실습 **지도비** 등 지급 가능
- 원칙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항목을 제시하는 **negative규제 방식**으로, **대학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제한 되어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체지침과 자율판단에 의거 사업비 집행 가능**

### < 장학금 - 수혜대상 >

Q6

관련질의 2건

-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2년, 박사4년)의 경우도 지급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주시면 안 되는지?
- 지급가능 장학금 종류 및 범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지침에 제시해 줄 수 있는지?

A6

사업비 집행가이드라인 P.8

- 불가. 본 사업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 대상은 학기 중 등록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사업의 목적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학 내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 가능
  - 장학금은 대학 내부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함. 다만 지급 대상의 적격여부,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시기 바람**
    - 대학 자율성 신장을 위한 지침 간소화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침 축소 개정 중
- ※ (부적격자 지급 예)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재학생 업무보조 장학금 지급 시,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 시간 계상 후 지급 / (목적 미 부합 지급 예) 프로그램 참여 시, 고시 합격 시, 특정 자격증 취득 시, 취업 시 등 지급(단순 참여, 격려성, 포상성 성격)



### < 프로그램 - 수혜대상 >

Q7

관련 질의 3건

- 내부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 모임도 지원 가능한지?
- 본 사업의 산학협력 영역에 대하여 대학의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지역 공동체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지?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운영되는 혁신 프로그램의 외국인 학생 지원(참여) 가능한지?

A7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9

- 가능.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비 및 운영비 사용이 가능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
    - 학생의 교육·연구·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 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 등 교육·연구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가능
    - 학생들의 교육·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교수법 관련 세미나 등도 지원 가능
- ※ 수혜대상 확대 요구에 따라 당초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던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현재 재학생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함” 이라는 문구 삭제

### < 프로그램 - 교재개발 >

Q8

관련 질의 4건

-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만 집행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교과목에 대한 교육·연구과정 개선활동도 집행 가능한 것인지?
- 교육과정 개발 등의 사업 관련 정책연구 추진 시 반드시 공모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 자율 판단에 의거 지정 과제(top-down)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A8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8

- **가능. 사업 목적 관련 교육과정 개선 등에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비가 집행가능하므로 목적 부합성에 따른 자율판단 및 집행 가능**
  - 다만, 관련 부적정 집행이 잦고 외부 감사 시 많은 지적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주의 집행**
- ※ (부적정 사례) 기존 교재 편집에 대한 원고료 지급, 연계 교과목에 대한 개발비 이중 지급, 기존 강의교안과 동일한 교안에 대한 개발비 지급, 공개 콘텐츠의 내용을 일부 발췌 편집한 교안에 대한 개발비 지급 등
- **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정책연구는 추진 시 Top-down방식, 교내 공모, 지정연구 모두 가능.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대학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선정절차는 필요**
  - 대학에서 계획 수립 시 공모/지정에 따른 선정기준, 공모 시 단독응모와 복수응모에 대한 선정기준 등을 수립하여 선정절차를 거치기 바람

### < 프로그램 - 소모임 도서 >

Q9

관련 질의 3건

- 학생 활동의 장려 및 일선 대학에서 비치 관리의 불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활동용 도서에 한해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지?**
  - 동아리별 1~2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여러 권(학생수 만큼) 구입하여 교재로 활용
  - 이용과정에 책을 파손 또는 훼손(형광색 표기, 메모 등)하는 경우가 다수
  - 사용 도서를 수거, 정리하여 도서관에 비치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이용시키는데 어려움
  - 사업단에서 일반자산처럼 보관하게 되면 공간적, 업무적, 활용적으로 매우 비효율적

A9

사업비 집행가이드라인 P.12

- 가능. 대학의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의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에서 사용하는 문제집 등은 예외를 인정**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중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지원비 등에서 학생들이 일종의 재료비로 구매 후 정산(정산서는 구비하되 도서의 중앙관리는 제외)
  - 그 외 도서는 기타 사업운영경비 내 도서구입비로 구매 후 중앙관리 필수

### < 프로그램 - 기념품 >

Q10

관련 질의 7건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상금 및 기념품 제공의 구체적 집행 기준은?
- 사회봉사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현금) 및 물품제공 금지를 풀어주면 안 되는지?
- 프로그램 진행 시 외부인을 통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념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A10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9

- 기념품 및 시상금 모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을 준용해서 집행 가능 (단, 관리대장 필수)
- 불가. 사회봉사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등은 **경상비적 성격으로 집행 제한**
- 가능. 기념품 지급 시 **‘재학생을 대상으로’**라는 제한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대학 자율판단에 의거,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인도 기념품 지급 가능
  - 다만, 현금전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은 관리부실로 문제가 가능성이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람

### < 프로그램 - 외국어, 자격증 >

Q11

관련 질의 4건

- 외국어 또는 자격증 취득 목적의 사업비는 집행 제한 항목이나, 재학생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은 허용**해주면 안 되는지?
- 영어 성적 향상 등의 학습 목표를 계획하고 달성하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경우 **인터넷 강의 수강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A11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9

- **가능. 전공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집행 허용 요청에 따라 ‘단순 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제한’으로 제한 범위를 축소**
  - 집행제한항목 : (당초)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 (변경) 학원 수강료, 단순 외국어 · 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즉, 취업을 위한 토익 시험, 컴퓨터 OA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지양
- **불가. 인터넷 강의 수강료도 학원 수강료와 동일하므로 집행이 제한 됨**
  - 본 사업은 학생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역량강화의 목적 또한 있음. 외부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지급은 학생의 역량은 강화될 지 모르지만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 실험실습 기자재 >

Q12

관련 질의 2건

- 사업으로 구매한 기자재를 대상으로 **관리 문구**(“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를 표기해야 함으로써 **별도의 관리스티커 발행 및 관리 등의 어려움**이 발생
- ‘기자재 구입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심의·의결 필요’에 대하여 **100만원 미만의 기자재에 대한 자체심의 예외** 건의

A12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11

- **가능.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따라 당초 관리기준에서 기자재 관리 문구 부착을 삭제하고, RFID태그, 바코드 등 대체 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 (변경 후)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 **3천만원 미만 구입 장비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의무 사항 없음.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심의·의결을 거쳐 재단이나 NFEC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다만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사업비 중앙관리 >

Q13

관련 질의 2건

- 프로그램 진행 시 학생 및 교원이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활동비를 선 지출하고 추후 정산하여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 해당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되어 관련 증빙이 구비 되었다면 가능하도록 검토 요청

A13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1

- 일부가능. 사업비는 중앙관리가 원칙이나 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금을 선 지급하고 결과보고 시 정산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단, 지원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가 필요하며, 학생이 아닌 담당교수 등에게는 선지급이 불가함

#### < 사업비 비목 및 회계 >

Q14

관련 질의 3건

- 대학회계 예산 계정과목과 본 사업예산 비목이 달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를 일치시켜 줄 수는 없는지?
- 사업비가 교비회계로 편성되는데, 대학의 교비회계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변경 등이 어려움. 2020학년도에는 일반대학도 교비회계나 산학협력단회계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

A14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1

- 불가. 본 사업은 국립대, 사립대, 국립대 법인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학 회계 비목(국립대 회계, 사학 회계 등)이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사업비 비목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사업 집행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비해 간략화 된 6개 비목으로 제시함 (ex. CK사업 7개 비목, PRIME사업 9개 비목, CORE사업 11개 비목, WE-UP사업 10개 비목 등)
- 불가. 본 사업은 산학협력단 주관 사업이 아닌, 대학 주관 사업으로 대학 총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 전체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바 교비회계로 사업비 지급



## < 구매 및 계약 >

Q15

관련 질의 2건

-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지?

A15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2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등을 적용함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모든 구매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함**
    - 입찰의 경우 조달청에 위탁(중앙조달) 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직접 공고하여 자체 입찰 진행(자체조달\*) 가능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기자재 구매 시
    - 자체조달 시 입찰공고의 시기,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36조에 따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해당 여부는 각 대학이 판단)**
    -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 수의계약 시에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안내공고(소액수의견적공고) 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3항 참조)

####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

Q16

관련 질의 2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억 또는 5천만원 미만의 사업비 비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은 언제인지?

A16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5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은 관리의 용이성과 자율성을 위해 대학에서 판단하는 중요도에 따라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 가능하도록 개선
  - (당초) ①비목 내 변경 : 자체 지침에 의거 수정 / ② 비목 간 변경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변경 (변경) 대학 자체 지침 절차에 의하여 ① 변경 후 대학 사업운영위원회 사후보고 혹은 ② 대학 사업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후 변경 모두 가능
- 예산 변경사항 및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별 사업 종료 1개월 전, 재단에서 요청 시 공문으로 제출 필요 (사후보고 사항)
  - 다만, 국립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변경 필요 시 소관부서인 ‘국립대학정책과’와 협의필요

#### < 사업비 이월 >

Q17

관련 질의 7건

- 1차년도 사업비의 이월액을 10%에서 20~30%로 상향시킬 계획이 있는지?
- 전산개발 등 용역 건은 입찰을 위한 절차 등으로 많은 기한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는데, 계약이 확정된 용역에 대하여는 예산의 사고이월이 인정되는지?
- 사업종료기간 외 장기 프로그램(국제장기연수 등) 추진 시 1차년도 사업비로 1년치를 모두 지원 가능한지? (예: 2019학년도 9월 1일 ~ 2020년 4월 30일 경우)

A17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3

- 불가. 이월 관련 사항은 국회 결산 주요 지적 및 개선 사항으로 이월 가능범위 확대 불가
- 인정. 공사계약, 전산개발 용역 등 계약이 확정된 용역에 대한 사고이월 인정
  - 별도 승인 불필요
- 불가. 당해연도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만 집행 가능. 1차년도와 2차년도로 사업비를 구분하여 집행은 가능

#### < 사업비 정산 및 증빙 >

Q18

관련 질의 4건

- 사업비 정산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 차기 사업운영에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 공유 요청
-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을 사업비 지출 영수증으로 인정 요청(법인카드 수량제한)
- 시내버스 및 택시 이용 시 교통비 증빙이 어려우므로 교통비 증빙 완화 요청

A18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P.2, 12

- 대학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 반납. 재단은 그 중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현장 정밀정산 추진
  - 매년 30% 내외 정밀정산 대상교를 선정하여 사업종료년도('22.2)까지 143개교 모두 정밀정산 수행
  - 정밀정산 대상은 사업비 집행률, 부정비리사항, 연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정밀정산 결과 도출된 사업비 부적정 사례는 대학에 공유하겠음
- 카드사용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증빙 사용가능
- 여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자체기준이 없을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여 수립가능(ex. 시내 버스 및 택시비는 일비로 지급(20,000원))

### < 연차평가 평가지표 >

Q19

관련질의 6건

-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평가지표(안) 세부내용 확정은 언제쯤 되는지?
  -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각 영역별 평가지표의 배점 등에 대한 조속한 확정 발표 요망
  - PRIME사업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이전 국고사업의 사후 관리 방안 이행 여부가 평가 감점 대상인데, 사업평가 중 감점이 차지하는 비율 및 이행 여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확인 필요

A19

- 연차평가 평가지표 관련사항은 **11월 중** 교육부에서 안내예정
  - (경과 및 일정) 연차평가 설계 연구('19.5월 ~) → 권역별 현장 의견수렴('19.7.15.) → 운영위원회 현안회의 상정('19.8.27.) → 대학별 의견수렴 예정('19.11월) → 연차평가 기본계획 발표(~'19.12월초)
- PRIME, CORE, WE-UP 사업의 후속 관리 방안은 부처의 각 과에서 계획 수립 후 **11~12월 중** 안내되는 것으로 확인함
  - 사업별 후속관리방안이 안내된 이후 부처의 연계 과와 협의하여 평가 감점비율 확정 예정
  - (일정(안)) 후속관리방안 확정('19.11월 중) → 후속관리방안 설명회 추진('19.12월 중)

### < 연차평가 보고서서식 >

Q20

관련 질의 3건

- 연차평가보고서 서식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 서식 안내 시점은?
  - 연차평가 관련 서식을 최소한 사업종료 2개월 전 공지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준비 및 정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부분과 사업실적 작성 비율은?

A20

- 연차평가보고서 등 관련 서식은 교육부 연차평가 기본계획(가칭) 발표 이후 안내예정.  
조속한 안내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일정(안)) 연차평가 기본계획 발표(~'19.12월 초) → 연차평가 보고서 서식 공지('20.1월 초) → 연차평가 보고서 접수('20.2~3월) → 1차년도 연차평가 추진('20.4~5월)
-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관련사항 안내예정

### < 성과인정 범위 >

Q21

관련 질의 5건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비만 투입되는 세부프로그램의 성과 인정 필요**
- 목표값을 달성하지 못한 자율 성과지표의 경우 **달성노력 정도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평가에 참작이 되는지 ?
- 지난 컨설팅 시 컨설팅위원들의 제언사항에 대해 수정사업계획서 및 2019년 사업추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차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는지?  
- 대학마다의 고유한 상황으로 컨설팅 시 제안사항을 100%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분명히 증명될 수 있다면 감점요인에서 제외필요

A21

- 교비만 투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이 풍부한 대규모 대학에 유리하므로 대학 간 **형평성** 및 연차평가 **공정성** 차원에서 성과 인정이 **어려움**
- 연차평가보고서 서식에 **대학의 자율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등을 적시**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결과 수정보완내역서(미반영 사유 포함)**를 **제공**하여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lt; 사업비 지침 및 Q&amp;A &gt;

Q22

관련질의 11건

- 대학들이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Q&A를 참고하여 집행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궁금한 사항은 유선으로 별도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선이 필요함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 바람 (집행관리 지침이 모호하게 기술되어있어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A22

- 대학별로 상황과 사례가 모두 다른데,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질의에는 서면 답변이 가능하지만 대학별 특수 상황에 대한 질의는 해당 대학의 사정과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봐야 답변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유선 답변이 많은 상황임
  - 그 간의 자주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의 혼란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모든 대학에 공통적용 가능한 FAQ는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제작·배포하였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합하여 안내하겠음
- 본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신장 요구에 따라 사업비 지침을 지속적으로 축소·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학에서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제한 되어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체지침과 자율판단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바람



## &lt;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승인 &gt;

Q23

관련질의 3건

- 정부재정지원 사업비에 한해 교육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집행 승인 절차 없이** 이·전용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 국립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연비 편성 예산은 이·전용 및 이월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은 사업비 정산시 반납해야 하는 반면
  - 사립대학은 교연비의 승인절차 없이 이·전용 등의 사업비 관리가 가능토록 차별하여 운영함에 따라 국립대학은 사업비 집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에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음.
- 2차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의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승인** 확정이 너무 지연되어 1차년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 부분은 해당되는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함

A23

-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승인 기준 및 절차는 국립대학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련 대학의 건의 내용을 전달하겠음

## &lt;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gt;

Q24

관련질의 1건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학생 위원의 자격조건 및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및 지침은?
  - 학생 위원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생이어야 하는가? 선발의 기준은 무엇인가? 학생 위원의 평가의 범위는 어느 정도여야 타당한가? 등

A24

-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어 합리적인 근거 하에 해당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위원을 포함하시기 바람
  - 학생 참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학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셔야 함

## &lt; 공유, 확산 &gt;

Q25

관련 질의 2건

-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관리 및 공유를 위해서라도 **각 지역권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
- 전체 실무자 워크숍이나 **권역별 회의를 1년에 2회 정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A25

- 대학 협의회 내 권역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의견은 **협의회를 통해 건의하여 추진하실 수 있을 것임**
  - '19.12월 ~ '20.1월 중 권역별, 전체대학 성과포럼 등 예정
- **(추가 안내사항) 대학 협의회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실적 upload 요청**
  - 사업계획서는 외부 공개 시 관련법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은 **연 2회(반기별, 8월말/2월말 기준) 프로그램별 예산대비 집행률** 작성 후 제출
  - (제출기한/방법) 2019.11.14.(목) 16:00까지 / [suka33@nrf.re.kr](mailto:suka33@nrf.re.kr)로 제출 (세부내용 공문참조)